

2020년도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16.(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택수,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8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26건(안건번호 제2020-150345호~제2020-15179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32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9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78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53303호~5409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9개, 총 78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8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해 왔음.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회의록 전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
- C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공개 처리안에 동의함.
- D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쪽~13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유)조이앤시네마’, ‘(주)쇼박스’, ‘(주)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롯데엔터테인먼트’, ‘미국 HBO’, ‘워너브러더스’, ‘콘텐츠웨이브’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32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150345호~제2020-151794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적으로는 보상이 없음. 최근에는 비공개 사이트 및 불법 한류콘텐츠 유통 해외 현지어사이트에 대해 제보를 한 자 중 신고우수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활동지원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음.
- C 위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가결 의견임.
- A 위원, B 위원, D 위원: 이견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제2020-150345호~15034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0350호~15179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출판물 '전지적 독자 시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 '♣♣'의 이용자 '♣♣'는 안전번호 제2020-150500호부터 150502호, 150504호부터 150512호, 150514호부터 150516호, 150518호부터 150525호, 150527호, 150528호, 150530호, 150532호, 150534호부터 150537호, 150540호, 150542호부터 150544호, 150546호부터 150548호,

150550호, 150551호, 150553호, 150555호부터 150560호, 150562호, 150564호, 150565호, 150567호부터 150582호 게시물을 작성하였음. 안전번호 제2020-150512호는 그 중 올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저작물인 '전지적 독자 시점'을 웹하드에서 20P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1편에서 551편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합법 시장에서는 2018. 5. 21.부터 2020. 2. 3.까지 총 551화를 연재하였고, 편당 약 100원에 소장할 수 있음.

(영화 '레베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1114호는 웹하드에서 370P에 판매 중인 영상저작물임. 한글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0. 10. 21.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개봉하였음.

(영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115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230캐시에 판매 중인 영상저작물임. 우리말 더빙판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10. 12. 15. 개봉하였고, 합법 시장에서 5,000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50350호~15179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0350호~15179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0345호~15179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8면부터 13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2404호~5330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2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김택수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